

현행(통합본)	개정안	개정 사유
<b>2. 대상자별 관리</b>		
<p><b>2.2. 간병인력 관리</b></p> <p>○ 코로나19 관련 증상, 확진자 접촉 등 감염노출 상황*을 확인한다.</p> <p>* 함께 식사한 사람(가족, 지인 등)이 자가격리가 되었거나 확진이 된 경우 등</p>	<p><b>2.2. 간병인력 관리(간병인, 상주보호자)</b></p> <p>○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때(증상 및 확진자 접촉 등) <b>행동요령</b>, 예방접종 상태와 접촉범위에 따른 <b>업무제한 및 선별검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.</b></p> <p>- 근무 도중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고 업무를 중지한다. 만약 자택에 있는 경우, 출근을 금한다.</p> <p>* 간병인력 선별검사는 우선순위 대상자 중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방법에 따라 시행한다.</p>	<p>(보건복지부 포함급여과, 의료기관정책과) 의료기관 입원환자 보호자, 간병인 PCR 검사위한 근거 필요</p>
<p><b>2.3. 방문객(면회 포함), 자원봉사인력, 실습생 관리</b></p> <p>○ 실습 학생·교육관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·대응 절차(사전 교육 포함)를 마련하여 시행한다.</p> <p>- 실습이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 상태, 코로나19 관련 증상 및 접촉력 등 확인하는 등 내규를 마련한다.</p> <p>- ‘실습생 준수 사항’을 마련하여 실습생 관리 담당자가 사전에 안내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.</p>	<p><b>2.3. -----</b></p> <p>○ 실습 학생·교육관리자 등 <b>장시간 의료기관 내 머무는 경우</b>,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·대응 절차(사전 교육 포함)를 마련하여 시행한다.</p> <p>- 해당 기관 업무 시작 전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한다.</p> <p>- <b>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때(증상 및 확진자 접촉 등) 행동요령</b>, 예방접종 상태와 접촉범위에 따른 <b>업무제한 및 선별검사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.</b></p> <p>* 실습생 선별검사는 우선순위 대상자 중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방법에 따라 시행한다.</p> <p>• 근무 도중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보고하고 업무를 중지한다. 만약 자택에 있는 경우, 출근을 금한다.</p>	<p>(지침관리팀) 의료기관 내 실습 등장 시간 머무르는 경우 직원 및 간병인력과 동일한 관리 필요</p>

현행(통합본)	개정안	개정 사유
	<p>- ‘실습생 준수 사항’ 등을 마련하여 실습생(자원봉사 등) 관리 담당자가 사전에 안내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.</p>	